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유진저축은행

2. 조치일 : 2020. 1. 9.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운영절차 불합리

① 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해 계좌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대리인')에 대해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수행하면서,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상으로는 법인 및 단체 고객의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 고객의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실제로는 개인고객 및 대리인에 대해 각각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여 고객확인 수행중

개인 고객의 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객확인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② 내규「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및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상에는 고객이 고액자산관리 대상으로 신규 등록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 1년마다 고객확인을 재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객이 고액자산관리 대상으로 등록되더라도 전산상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시에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액자산관리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등록 시점에 즉시 고위험으로 분류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① 저축은행중앙회의 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한 의심거래 추출기준(◎개)을 사용하면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별도의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부 추출기준이 회사의 실제 운영현황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가상통화 거래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고객명단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명단을 대사하고는 있으나,

가상통화 관련 의심되는 금융거래 행위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추출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거래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식별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3절의 '주요 의심거래 유형' 등을 반영한 가상통화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